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행정안전부 장관 (대통령경호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·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하여 경호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며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·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연구개발 등의 추진)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·실험·조사·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필기시험·면접시험·신체검사”를 “서류전형·필기시험·면접시험·신체검사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필기시험·면접시험”을 “서류전형·필기시험·면접시험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호지원단장”을 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3(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의3(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·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행사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5(연구개발 등의 추진)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·실험·조사·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
제13조(공개경쟁채용시험)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<u>필기시험·면접시험·신체검사</u>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·지능검사·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	제13조(공개경쟁채용시험) ① ----- <u>서류전형·필기시험·면접시험·신체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·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, 실기시험 · 체력검정 · 지능검사 · 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9조(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(이하 “보통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이 되고,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)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) ①----- 서류전형 · 필기시험 · 면접시험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징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기획관리실장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